

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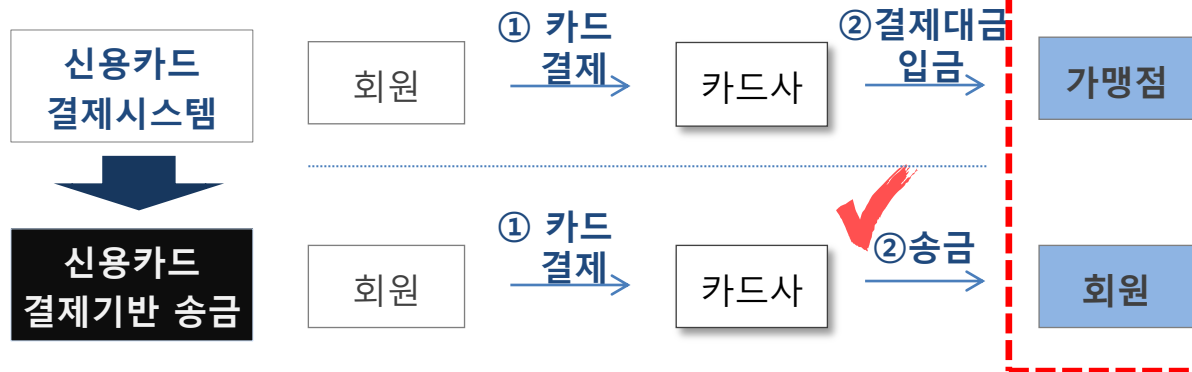
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제안



I. 신청 서비스 소개

카드 회원간 연결을 더하는, 신용카드(여신/신용공여)를 활용한 개인간 간편송금 서비스

컨셉



특징



송금인·수취인
관리

: ① 부여된 고유번호 / ② 저장된 휴대폰 전화 번호



구현 플랫폼

: '신한PayFAN' (1,000만 가입고객, 월 380만 방문)



출금

: ① 결제계좌인출 / ② 수취인의 카드결제대금 차감



대상

: ① 송금 : 신한카드 회원 / ② 수취 : 비회원도 수취가능
(신한PayFAN 가입은 필수)

Ⅱ.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

서비스의
혁신성

최초

국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꼭 필요한 최초의 서비스

- 선불지급수단 활용이 아닌, 수취인이 신용카드 거래의 가맹점이 되어 직접 수취하는 방식
 - 국내는 신용카드가 가장 보편화된 지불결제 수단임에도 계좌 기반의 송금 서비스만 존재
 - 해외는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사용 (PayPal, Venmo, Visa Direct)
- ➡ 해외보다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된 국내는 신용카드를 통한 송금 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함

소비자
편익

편리함

고객의 신용카드 한도 이용 편리한 송금

- 현금 or 계좌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도 즉시 송금
- 소비자에게 익숙한 간단하고 편리한 송금방식 제공
→ 경조사, 더치페이 등



안전함

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로 안전한 송금

- 개인간 물품거래 시 에스크로 서비스와 결합하여 결제 안정성 확보
→ 低비용으로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



Ⅲ.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과 개발 일정

규제특례
적용의
불가피성

● 관련법령

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5호가목 및 제19조제5항1호 :

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는 신용카드 거래를 규제

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:

“신용카드회원”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불가능하여, 송금 시 송금자가 수수료 부담 불가능

● 특례적용 요청 사유

1 해외 유사 서비스가 존재하며, 소비자 피해는 미미함

2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한 유사 사례 존재

- 선불카드, 상품권 등 일정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충전 및 구입 허용
- 기타 국세 및 보험료납부 또한 별도의 근거법령(국세 기본법 등)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 허용

3 고객 관점의 편의성 확보

- 일반적 송금거래의 경우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보편적

개발일정

